

4. 建設業法 施行令中 改正令 및 住宅建設 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-141號 1995. 5. 30

◇개정이유◇

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(법률 제4,921호, 1995. 1. 5)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◇주요골자◇

- 가.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월의 영업정지를 명함.
- 나.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·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1월의 영업정지를 명함.
- 다.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
 - 품질시험 및 정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함.
 - 건설업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월의 영업정지를 명함.
 -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을 명함.

라.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을 명함.

◇의견제출◇

이 건설업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 : 건설기술심의관실 기술정책과장, 전화 : 504-902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) 및 주소

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